



제 4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 제4부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289건의 언론보도 중 14건의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합니다. 주요 사례는 침해 유형별 의결번호의 선후를 기준으로 수록되었습니다.
-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사 례 1

의결번호 제2013-62호

- 언 론 사** ▶ 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4월 4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불쌍해 취직시켜줬더니... 친구 운영 사우나서 야금야금 돈 빼가

1. 보도내용

「불쌍해 취직시켜줬더니...친구 운영 사우나서 야금야금 돈 빼가」 제하의 보도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CCTV 사진을 게재하여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chosun.com

불쌍해 취직시켜줬더니...친구 운영 사우나서 야금야금 돈빼가

이치훈 기자 je@chosun.com

입력 : 2013.04.04 15:05 | 수정 : 2013.04.04 15:06



친구 운영 사우나 돈을 가져가고 있는 용의자 모습/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서울은평구에서 24시 사우나를 운영하는 이모(여·51)씨는 최근 6개월간 매출이 떨어져 고민이었다.

손님이 준 것도 아닌데, 결산을해보면 돈이 늘 100여만원씩 맞지 않았다. 남편이 출처 쓰는 것이라고 의심한 이씨는 지난해 9월 카운터 구석에 몰래 CCTV를 설치했다.

몇달 뒤 CCTV 화면을 확인한 이씨는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범인은 다름 아닌 그의 친구 송모(여·50)씨. 화면에서 송씨는 카운터로 다가가 두리번거리며 기척을 살피고는 돈을 꺼내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깜짝놀란 이씨가 이견 영상까지 모두 확인해보니 범행은 100차례가 넘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이씨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를 이용해 총 112회에 걸쳐 6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송씨와 지난해 산악회에서 등산을 하며 알게 됐다. 취미도 대화도 잘 맞는 등년배라 친하게 지내왔다. 이씨는 남편 없이 다세대주택 지하방에서 자식을 키우는 송씨의 사정이 마음에 걸렸다. 이씨는 믿음직한 친구인 송씨에게 자신의 사우나 역할 관리인 일자리를 마련해줬다.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씨는 카운터에 쌓인 돈을 보고 욕심이 났다. 처음엔 몇천원을 집어갔지만 나중에는 금고나 서랍을 뒤져 적게는 3만원 많게는 7만원씩 빼돌렸다. 주로 이씨가 자리를 비울 때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거나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의심을 사지 않도록 5만원권 1매, 1만원권 3~7매를 소량만 빼내곤 했다.

이씨가 눈치 채지 못하자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다. 바로 옆에서 이씨가 손님을 맞고 있을 때도 카운터 밑 작은 서랍에서 돈을 빼내기도 했다.

송씨는 훔친 돈으로 아웃도어 등등산용품들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4일 송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인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사 례 1

의결번호 제2013-24호

언 론 사 ▶ 이타임즈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1월 31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22개월 어린이집 원생 떡볶이 먹다 질식사

1. 보도내용

「22개월 어린이집 원생 떡볶이 먹다 질식사」 제하의 보도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현재 게재되어 있는 사진은 향후 지속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모자이크 처리나 삭제하기를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기사와 무관하다고 보이는 아동들의 사진을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언론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회기준」 제1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etimes
이타임즈

22개월 어린이집 원생 떡볶이 먹다 질식사



(합곡=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22개월된 어린이집 원생이 떡볶이를 먹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오후 5시 20분에 경북 합곡읍 왜관읍 모 어린이집에서 생후 22개월된 원생 이모군이 떡볶이를 먹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어린이집측이 응급조치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군이 떡볶이를 먹다가 질식사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어린이집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바일업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김용민 yongmin@yna.co.kr 2013/01/31 10:32:47)

Copyright 연합뉴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times
www.etimes.net

157-67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69-6번지 대운빌딩 2층 (대표이사-양영일) 사업자등록번호: 120-87-06947
Copyright © (주)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569-8079 wrn@etimes.net

사 례 2

의결번호 제2013-217호

언 론 사 ▶ 데일리안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10월 26일자 연예면

기 사 제 목 ▶ 김○○ 부부 폭행 맞고소 '남편 대마초 혐의 시인'

1. 보도내용

「김○○ 부부 폭행 맞고소 '남편 대마초 혐의 시인」 제하의 보도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 뉴스앵커 출신 김○○ 기자의 이혼소송 사실을 보도하면서 남편의 초상을 공개했다. 비록 김○○가 유명인이라 하여도 이혼소송중이라는 불미스러운 기사에서의 가족 초상은 설사 이전 방송에서 본인의 허락 하에 촬영된 사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유로 사용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다시 얻어 기사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김○○ 부부 폭행 맞고소 '남편 대마초 혐의 시인'

신경숙 '경향신문' | 등록 : 2013-10-26 10:00



▲ 대문 소송 중인 김○○ 부부, © 데일리안 DB

김○○ 부부는 김○○(40)가 결혼 9년 만에 피경을 맞은 가운데, 양 측이 맞고소하며 경매까지 대립하고 있다.

김○○ 부부는 상대 권역로 남편을 고소하고 집권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상태, 그러나 이달 초에는 시어머니로부터 권역로 권역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김○○은 시어머니는 아낀것을 차에 말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금융연인 남편 김○○ 씨(43)도 김○○을 상대로 오히려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특히 김○○ 씨는 최근 대마초를 피운 권역로 조사를 받아 체포되기도 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대마초를 피웠음을 시인해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 판정이 나와 구속 유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인 처벌은 피한다 하더라도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부부는 내달 6일 첫 조정거양을 갖는다. 이들의 법적 다툼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주목된다.

한편, 김○○ 부부는 2004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재배포, 무단복제 금지

사 례 1

의결번호 제2013-7호

언 론 사 ▶ 메디컬투데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12월 10일자 사건사고면

기 사 제 목 ▶ ○○○ ○○○ 대마+○○○ 배합 신종마약 유통한 美 탈영병 검거

1. 보도내용

「○○○ ○○○ 대마로 알려진 ‘○○○’와 ○○○ 등을 배합한 신종마약을 제조 및 유통한 미군 탈영병 4명이 검거됐다. (중략) 경찰은 대량의 합성○○ 마약가루를 커피 국제우편 택배로 위장 밀반입해 이를 고양이 흥분제 ○○○로 알려진 허브 종류의 식물 ‘○○○’와 휘발성 액체 ○○○, ○○ 청정제 ○○○을 적당히 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신종마약 ○○○○를 전자 저울로 측정, 1g 당 ○○~○○달러에 판매한 미군 탈영병 4명을 검거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구입경로와 신종마약(○○○○)의 제조 원료 및 제조방법, 판매가격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해당 마약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2

의결번호 제2013-29호

언 론 사 ▶ 스포츠서울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1월 24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우유주사’ ○○○○, “한번 맞으면 그 맛 잊지 못해”

1. 보도내용

『우유주사’ ○○○○, “한번 맞으면 그 맛 잊지 못해”

(전략) “○○○○에 빠지는 이유는 아마도 약을 투여한 이후의 맛 때문일 것”이라며 “○○○○을 맞으면 숙면을 취하고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 든다. 아마도 그 맛을 잊지 못해 빠지게 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약물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제목과 내용에서 ○○○○의 환각적 효능을 자극적으로 상세하게 적시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해당 약물의 환각적 효능을 알지 못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3

의결번호 제2013-35호

언 론 사 ▶ 한국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1월 30일자 28면

기 사 제 목 ▶ 성폭행 악용되는 ○○○, ○○○ 주문 ○시간 만에 배달

1. 보도내용

「(전략) 피해 여성 A씨는 화장실에 간 사이 김씨 등이 술잔에 ○○○을 섞어 잠들게 한 뒤 두 사람이 차례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김씨 일행이 건넌 술을 마시자 평소와는 다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정신이 몽롱했고, 이날 일의 상당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중략)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젊은 여성 4명에게 ○○○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일당이 붙잡혔다. (중략) 채용면접을 빌미로 ○○○을 커피 등에 타 먹인 뒤 여성 3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히는 등 ○○○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마약 성분이 함유돼 있는 ○○○을 ○○○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 ○○ 검색창에 ‘○○○’을 입력하자 ○○○이나 ○○○ 등에서 ‘○○○과 같은 환각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게시판에 나온 번호를 골라 전화하자 판매자는 “1정에 ○만○○○○원이고 입금 후 ○시간 안에 ○○○로 배달해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판매자는 “국내에서 처방받는 ○○○의 용량은 정당 ○○mg이지만 해외 제품은 ○○mg으로 환각이 더 오래 지속된다”며 “○~○정만 술에 타서 여성에게 먹일 경우 거의 기억을 못하는 마약의 일종”이라고 소개했다. ○○○뿐만이 아니다. 이날 방문한 서울 ○동의 한 내과에선 ○○○에 시달린다는 기자의 말에 담당 의사가 ○○○ 두 달치(○○정)를 바로 처방해줬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성분이 함유된 ○○유도제인 ○○○의 구입경로와 성폭행에 사용된 약물의 사용량, 사용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해당 마약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4 **의결번호 제2013-75호**

- 언 론 사** ▶ 경남매일
-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4월 17일자 4면
- 기 사 제 목** ▶ 원룸서 ○○약 이용 ○○○ 제조

1. 보도내용

「(전략) 이들은 시중에 흔히 보이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을 구매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제조법으로 ○○○을 제조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제조한 ○○○을 인터넷을 이용,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까지 했다. (중략) 구속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창원시 의창구의 한 원룸에서 종합 ○○약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인 ○○○○○○○을 추출, 정제하는 방법으로 ○○○ ○○g(시가 ○억 ○천○○○만 원)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이들은 매주 1회 ○○○ ○g씩을 제조해 총○○g(시가 ○억○천○○○만 원 상당)을 제조했으며 주거지인 원룸에서 이씨는 160여 차례, 김씨는 50여 차례 ○○○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번 ○○○을 추출·정제하는데 종합 ○○약 ○○여 통을 썼으며, 제조과정에서는 특유의 약취가 나지만 일주일에 ○g가량씩 조금씩만 제조해 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제조 원료인 ○○약 성분명(○○○○○○○)을 적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마약을 제조할 수 있음을 공개하였다. 이는 해당 마약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을 사용하거나 제조할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

의결번호 제2013-88호

언 론 사 ▶ 뉴시스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5월 12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퇴임 앞둔 ○○ 학교에서 목 매…우울증 심해서?

1. 보도내용

「퇴임을 앞둔 중학교 ○○이 학교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강원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8분께 횡성군 ○○리 ○○중학교 ○층 ○학년 교실에서 이 학교 남 모(59) ○○이 문고리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교직원 변 모(39)씨가 발견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의 자살 사실을 보도하면서 자살자가 근무하던 학교의 이름과 주소를 적시하여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2

의결번호 제2013-282호

- 언 론 사** ▶ e머니투데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11월 6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대 건물 7층서 남학생 투신 숨져

1. 보도내용

「우울증을 겪고 있던 대학생이 학교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6일 서울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대학교 ○○관 7층 복도 계단 쪽에서 재학생 한 모 씨(21·남)가 뛰어내렸다. (중략) ○○○학과에 재학 중인 한씨는 평소 우울증을 겪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외에 학교명과 학과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은 본인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3

의결번호 제2013-289호

- 언 론 사** ▶ 시사포커스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11월 17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회사 업무 힘들다고 40대 회사원 자살

1. 보도내용

「충북 영동군 ○○면 ○○리의 한 야산에서 16일 오후 5시 55분께 ○○○○○○○○○○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 모(40)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서씨의 형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외에 근무처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 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은 본인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

의결번호 제2013-42호

- 언 론 사** ▶ 무등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2월 19일자 5면
기 사 제 목 ▶ 하룻밤새 차량 10대 털었다

1. 보도내용

「(전략)임씨는 ○○ ○○○○를 이용, ○○석 ○○을 깨는 수법으로 경보기도 울리지 않게 차량을 털어왔다. 그는 ○○○○를 ○○석 ○쪽 ○○과 ○○○○ 사이에 넣고 뒤로 젖혀 최대한 차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을 깬다. 깨진 ○○가 차 안쪽으로 쏟아지고 ○○된 유리는 그 소리마저 적게 나 주변에서 눈치채기 어려워 범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경보기는 ○○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 ○을 열지 않으면 울리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범죄에 사용된 도구 및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2

의결번호 제2013-65호

언 론 사 ▶ 매일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4월 18일자 10면

기 사 제 목 ▶ 100달러로 쉽게 만들 수 있어 테러범 애용

1. 보도내용

「(전략) 엄마 ○○○에서 폭탄을 만드는 법(Make a Bomb in the ○○○○○○○○ of Your Mom)이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에 따르면 ○○○ ○쪽에 ○○ 파편이나 ○ 등 유해 물질을 부착하고 ○○ 등 인화 물질로 ○○○을 채운다. 그리고 나서 ○○○○○○○○ 장치로 활용되는 ○○를 ○○○에 연결해 ○○ 장치로 활용한다. 이후 ○○ 등 ○○○ 장치를 ○○장치에 연결해 원하는 시간이 흐른 뒤 터지도록 할 수 있다. 알카에다는 “○○○이 폭탄 제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 폭탄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감지하고 2004년부터 경고해왔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사제폭탄의 제조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이를 모방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

의결번호 제2013-178호

- 언 론 사** ▶ 동아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7월 11일자 12면
기 사 제 목 ▶ ‘10대 오○○’… 소녀 성폭행 후 ○○살인 “호러영화 흥내”

1. 보도내용

〔전략〕 이때부터 그는 김 양의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을 욕조로 옮긴 뒤 ○○○ ○○○로 ○○을 내려다 여의치 않자 ○○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사용하던 ○이 부러지자 9일 오전 1시 반경 모텔 인근의 편의점에서 손잡이 길이 ○○cm, 날 길이 ○cm의 ○○○ ○○○을 새로 구입해 계속 시신을 훼손했다. 9일 오후 1시 16분. 약 ○○시간에 걸친 시신 훼손이 대략 마무리됐다. 그는 검은 ○○○ ○○○○를 구입해 시체를 옮겨 담았다. 도려낸 ○○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에 넣고 ○을 내려 유기했다. 수습 차례 같은 일을 반복했다. 나머지 뼈는 ○○○○에 담기 좋게 ○○을 냈다. (중략)

심 군이 ○○ 낸 시신의 뼈는 모두 ○○조각이었다. ○을 도려내 ○만 남은 상태로 ○○kg 가량 무게였다. 심 군은 경찰에서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을까 봐 죽인 뒤 시체를 가져나갈 방법이 없어 ○○을 도려냈다”고 진술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용인의 10대 ○○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2

의결번호 제2013-199호

- 언 론 사** ▶ 경북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9월 11일자 4면
기 사 제 목 ▶ 유흥음식업 집회 중 분신

1. 보도내용

「유흥음식업 집회 중 분신」 제하의 보도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흥음식업 관련 집회를 보도하면서 집회 도중 분신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경북일보

2013년 09월 11일
04면 (사회)

유흥음식업 집회 중 분신 10일 오후 2시께 춘천시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영세유흥음식업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지침철회 규탄대회에서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정영수(68) 지회장이 분신을 하고 있다. 사고 직후 정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중태다.

(15.5-10.3)cr

